

2024년 제3회 대전고등검찰청 공무직근로자(기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전고등검찰청 2024년도 제3회 공무직근로자(기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4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공무직근로자 (기계)	1명	○ 청사 시설 관리 유지·관리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대전고등 검찰청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제3항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관리규정(대검 예규 제1248호)
-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대검 훈령 제297호) 등

3. 근무조건

● 공무원근로자(기계)

- ▶ 월 보수액 : 약 200만 원 상당(연차에 따른 차등 지급, 수당 별도)
※ 각종 수당 포함 시 월 보수액 : 공무원근로자 3급 1단계 기준 약 320만 원 상당
-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무기계약(정년 만60세)
- ▶ 근무형태 : 교대근무(3교대) ※필요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행
【단, 세부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 정액급식비, 선임수당 야간·휴일·초과근무 수당 등, 가족 수당, 위험수당, 명절 휴가비 등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수습기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응시 자격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 격 사 유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라. 응시연령

-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 ▶ 공무원직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마.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한 것에 한함)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용접,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용접,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 위 응시자격(가항~바항)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가능

5.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직무관련(기계) 분야 근무 경력자(연차별 차등 배점)
 -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국가, 공공기관, 법인에 소속되어 관련 기계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1년 이상의 경력만을 인정

기타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는 ①업체명, ②근무기간,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 ⑤근무형태(주 근무시간), ⑥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⑦발급일이 모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①~⑦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및 '4대 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을 일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X(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자격증별 차등 배점)

기술사	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가스, 전기
기능장	에너지관리, 용접, 전기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용접, 공조냉동기계, 전기, 소방설비(기계, 전기)
산업기사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용접, 공조냉동기계, 전기, 소방설비(기계, 전기)
기능사	전기

- ▶ 필수 자격증 및 필수 자격증 동일 종목의 상위 자격증은 배점 불가
 - ▶ 동일 종목 여러 분야의 자격증 제출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 기재된 기계분야 자격증 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출 불필요
- ※ 필수 요건 자격증은 제출 요망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 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 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4) 가점 및 감점요건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평정요소 4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기타 유의사항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시험계획공고	'24. 9. 4.(수) ~ '24. 9. 13.(금)	- 공고문 게시 ▣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4. 9. 9.(월) ~ '24. 9. 13.(금)	- 대전고등검찰청 8층 총무과 ※ 방문접수 : 근무시간 중에 실시 ※ 등기우편 :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서류전형	'24. 9. 24.(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4. 9. 26.(목)	- 공고문 게시 ▣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면접시험	'24. 10. 2.(수)	
최종합격자발표	'24. 10. 4.(금)	-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신규임용	'24. 10. 말	

※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될 경우 대전고검 홈페이지 게시)

8.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highdaejeon/index), '알림마당 > 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4. 9. 9.(월) ~ 2024. 9. 13.(금) 09:00~18:00

다. 접수처

- 대전고등검찰청 8층 총무과 인사팀 (☎ 042-470-3243)

※ [우 : 3523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둔산동 1390) 대전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팀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원서접수처에 직접(대리접수 가능) 제출
 - ▶ 등기우편 접수
 - :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증' 기재(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 방문 접수
 -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접수기간 전 및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이후 도착분은 반송 처리)
 - ※ 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로 송부 예정
 -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필수】 응시자 기본서류 1부
- ② 【필수】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
- ③ 【필수】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④ 【필수】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 ⑤ 【필수】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 ⑥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제5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⑦ 【필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서식 제6호) 1부
- ⑧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서식 제7호) 1부
- ⑨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8호) 1부
- ⑩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2024. 9. 4.)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⑪ 【필수】 직무관련 분야(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⑫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별지 서식 제9호)(해당자에 한함)
 - ※ 경력증명서에는 ①업체명, ②근무기간,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 ⑤근무형태(주 근무시간), ⑥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⑦발급일이 모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①~⑥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요
 -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⑬ 직무관련 분야(우대사항 요건)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제출한 원본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팀 (☎042-470-3243)
 - ※ 상담 가능시간 :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8:00